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60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 박해철・송옥주・박홍배

이광희 • 추미애 • 장경태

한민수 · 서영석 · 복기왕
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.

이에, 전시·사변·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

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(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"을 "다음 각 호의"로, "합의하여" 를 "협의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 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- 2. 전시·사변·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

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4조의2(국회경비대)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.

- 1. 의장이 행사한 경비권의 집행
- 2. 그 밖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
- ② 국회경비대는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

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 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국회경비대의 조직, 업무, 직무범위 및 직무장소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3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	제73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
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	<u>다음 각 호의</u>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	<u>협의</u>
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	하여
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	
<u>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</u>	
<u>판단하는</u> 경우에는 각 교섭단	
체 대표의원과 <u>합의하여</u> 본회	
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	
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	
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	
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	
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	
다.	
<u><신 설></u>	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	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
	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
	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
	<u>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</u>
	판단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2. 전시・사변・계엄 또는 이에
	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

② ~ ⑦ (생 략) <신 설> <u>급한</u>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<u>경우</u>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44조의2(국회경비대)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.

- 1. 의장이 행사한 경비권의 집

 행
- 2. 그 밖에 국회의 안전 및 질 서 유지
- ② 국회경비대는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 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 法警察官吏)의 직무를 수행한 다.
- ③ 국회경비대의 조직, 업무, 직무범위 및 직무장소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